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원무 부서장

제 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-6654(2015.12.24)

2. 위 근거와 관련, 「건강보험법 시행령」 개정내용(2016.1.1.시행)에 따른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<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 >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환자(청구구분코드 E)가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(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)에 내원 후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(500원) → 정률제(3%)로 변경 (본인부담금이 500원 미만인 경우 500원)

※ 의원·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기존의 본인부담(500원)과 동일

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 행 : 보험 제 2015-649 (2015.12.29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